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
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4선거구,

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김재형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

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

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의 내용은,

전자게시대의 설치 대상지역에 지하철역 광장을 추가하고,

전통시장 주변 100미터 이하의 주거지역·녹지지역에

전자게시대 설치 시 대상지를 사유지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

설치 대상지를 국·공유지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.

- 이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예방함은 물론,
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전자계시대를 통해
지하철 광장과 전통시장 주변의 국·공유지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
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